

2022년 6차산업 경영체 체험·편의시설 확충 지원계획

- ❖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6차산업 인증업체 체험·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

I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2. 4월 ~ 12월
- 사업량 : 2개소
- 사업비 : 84백만원(자체재원 50, 자부담 34) *보조율 60%
 - 개소당 : 42백만원(보조금 25, 자부담 17)
 - * 사업비는 사업 신청량에 따라 변경 가능
- 사업대상 :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
 - ※ 「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」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
- 사업내용
 - 인증 경영체 체험·편의시설 보완·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
 -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

II 지원자격(요건) 및 지원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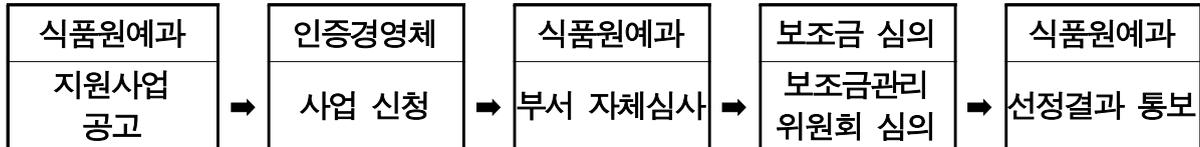
- 지원자격
 - 농업법인·조직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함
 -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, 1년 이상 운영실적(설립일 기준)이 있을 것
- 작목반 등 비법인이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
 -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.
 - 농업법인의 경우, 경영체 등록된 본점 소재지가 제주지역일 것
 -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,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어야 함.

□ 지원 제한

- 동일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
-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사업(보조, 융자)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

III 추진계획

□ 사업추진 절차



□ 사업공고 : 2022. 2. 7(월) ~ 2. 21(월). 18:00

- 신청장소 : 제주도 식품원예과(☎710-3132)
- 신청방법 : 직접 방문(신청서 등 구비서류 검토 후 접수)
- 제출서류 :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

□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등 자체 심사 : 2022. 3월 중

-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자격요건,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(70점 이상)가 높은 순으로 선정
- 심사표 : 붙임

□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: 2022. 3월 중

□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 : 2022. 4월 ~ 12월

□ 사후관리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· 부동산의 종물(건물내기계설비)	준공일	7년간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
· 주요기계, 장비, 자재	준공일	5년간	

IV

제출서류

- ① 보조금지원 신청서(서식1) ② 사업계획서(서식2)
- 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(사본) ④ 사업체 소개서(서식3)
- ⑤ 6차산업 경영체 체험·편의시설 확충사업 신청서(서식4)
- ⑥ 보조사업자 관리카드(서식5) ⑦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(서식6)
- ⑧ 최근 2년간 재무제표(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)
- ⑨ 사업자 등록증(사본), 법인등기부등본,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- ⑩ 사업장 등기부등본(임차 시 임대차계약서)
- ⑪ 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

붙임1

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

신청업체	사업명		업체명	
------	-----	--	-----	--

□ 항목별 심사기준

평가항목(배점)	평가기준	점수
1.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(30)	·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(10)	
	· 신청업체의 사업 추진계획(20) -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사업 준비 및 추진계획 실천 가능성	
2. 체험·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(20)	· 시설 설치계획의 구체성(15) - 체험·편의시설 확충 후 운영 계획	
	· 부지확보 및 가능성(5)	
4. 자부담 확보 능력 및 사업체 운영인력 확보 여부(20)	·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자부담 확보능력(10)	
	· 사업체 운영 및 체험인력 확보여부(10)	
5. 체험관광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(30)	·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체험 관광시설로써 발전 가능성(20) - 자체 체험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	
	·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및 향후 발전 가능성(10)	
※ 가점(5)	· 여성(1) 또는 청년농(1), 친환경농업 인증업체(1) ·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·장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(3)	
총 점		

※ 점수 배점기준

구 분		수(100%)	우(80%)	미(60%)	양(40%)	가(20%)
항목별 점수	배점 5점	5	4	3	2	1
	배점 10점	10	8	6	4	3
	배점 15점	15	12	9	6	3
	배점 20점	20	16	12	8	4

보조사업 추진시 유의사항

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 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의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 하여야 함.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할 수 있음.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.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
-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5. 보조금 사후관리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)
 - 토지, 건물 등 부동산 : 10년
 - 건물 내 기계설비, 비닐하우스 등 부동산의 중물 : 5년

6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고, 기타사항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.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(☎064-710-3132)로 문의